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동향

정 태 인*, 정 수 연*, 윤 재 석*

요 약

중국은 단일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고, 네트워크 안전법, 형법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왔다. 2020년 10월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 주요 내용,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 서 론

중국은 경제 규모, 인터넷 이용률 등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여겨졌다. 단일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부재하여 네트워크 안전법(网络安全法), 형법 등 다양한 법률에 관계 조항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 중국의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부처는 국가 인터넷 정보 관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로 인터넷 사용 실명제, 인터넷 콘텐츠 검열 제도 등을 담당하고 있어, 독립성이 강조되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중국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국제 협의체인 GPA(Global Privacy Assembly),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의 회원이 아니고, 옵서버로 참석하지도 않는다^[2].

중국은 스마트폰의 보급,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 9억 명, 인터넷 웹 사이트 400만 개, 앱 300만 개 등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역기능에 해당하는 보이스 피싱 등 개인정보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에 발생한 쉬위위(徐玉玉) 사건 등을 통하여 중국 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3]. 이에 2017년 네트워크 안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4]. 그러나 네트워크 안전법은 네트워크의 안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일부 존재하나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전

체적인 구조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비슷하다^[5]. 그러던 중 2020년 10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2차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6].

한편 세계의 주요 국가·지역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앞 다투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U는 2018년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였으며, 러시아, 베트남 등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7].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중국도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비하여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2020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개한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기반으로 한국 법률과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과정을 모니터링할 때 주의해야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고의 내용은 한국 인터넷진흥원이 번역한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www.privacy.go.kr/pic)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 tijung@kisa.or.kr; 책임연구원, nara0205@kisa.or.kr; 팀장, jsyun@kisa.or.kr)

II. 법률 구성 및 한국 법률과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8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은 총칙,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개인의 권리,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담당 부처, 법률 책임,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법 시행에 필요한 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표 1]은 법률의 구성과 조항의 주요 내용이고, [표 2]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과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보여 준다. 한국 법률과 달리 조항별 제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해당 제목은 저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중국은 2008년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공개하였으나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2017년 시행한 네트워크 안전법은 일부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네트워크 안전,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보호, 개인정보 보호, 불법 정보 단속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 완성도가 떨어졌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이용자 비밀 유지(제40조),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제41조), 개인정보 유출, 변조, 훼손 금지(제42조), 개인정보 삭제 및 정정 요구 권리(제43조), 개인정보 매매 등 금지(제44조), 개인정보 비밀 유지(제45조)가 있으며, 위반 시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부과, 불법 소득이 없을 경우 5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렇지만 메신저 서비스 등의 이용자 실명제(제24조), 불법 사이트, 통신 그룹 개설 금지(제46조),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 정보 차단 및 보고(제47조) 등의 조항도 있어, 같은 법 안에 개인정보보호와 콘텐츠 검열이 동시에 존재하는 점이 특징이다. 네트워크 안전법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과 유사한 구조다. 한국은 2020년 2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사·중복 조항을 모두 정리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네트워크 안전법을 비슷한 방식으로 개정할 것으로 추정된다.

III. 주요 내용

3.1. 법의 적용 대상

- 법의 적용 대상을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국 외에서 중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

용이 가능(제3조)

- ① 국내 자연인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 ② 국내 자연인의 행위를 분석, 평가 ③ 법률 및 행정법규 상 규정된 기타 사항
- 국외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역의 적용은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유사

3.2. 개인정보 처리 원칙

- 개인정보 처리 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 처리 목적과 부합하는 처리, 공개적이고 투명한 원칙 준수, 개인정보 처리 규칙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규정(제5조~제7조)
-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 동의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이행, 법적 의무 이행, 위급 상황, 공공의 이익, 타 법률 규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제13조)
- 개인정보 처리 전 개인정보처리자의 연락처, 개인정보 처리 목적·방식·유형, 보관기간, 개인 권리 행사 방식·절차, 기타 사항 등을 개인에게 고지(제18조)
- 복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방식을 결정 시, 각자 권리와 의무를 정하며, 개인 권리 침해 시 연대 책임(제21조)
 - GDPR 제26조(Joint Controllers) 참조^[8]
- 개인정보처리자의 수탁자 감독, 합병·분할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제22조~제24조)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참조
-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동 의사 결정 시 개인의 설명 요구 및 거절 권리 보장(제25조)
 - GDPR 제22조(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 참조
- 공공장소에서 이미지 수집, 개인정보 식별 설비 설치 시 공공안전보호를 위한 목적으로만 가능(제27조)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참조
- 민감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처리 필요성,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지(제29조~제32조)

(표 1)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및 주요 내용

구분	조항의 주요 내용	구분	조항의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3장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칙	제38조 개인정보 국외 제공 조건				
	제2조 개인정보의 중요성		제39조 개인에게 고지 및 동의				
	제3조 적용 대상		제40조 핵심정보 인프라 운영자 등의 개인정보 국내 보관				
	제4조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		제41조 사법 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 국외 제공				
	제5조 개인정보 처리 방식		제42조 개인정보 제공 제한 또는 금지 목록				
	제6조 개인정보 처리 목적		제43조 국가, 지역에 상응하는 조치(상호주의)				
	제7조 개인정보 처리 원칙		제4장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관한 개인의 권리	제44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알 권리 및 결정권			
	제8조 개인정보 정확성			제45조 개인정보 열람, 복제 요구권			
	제9조 개인정보 보안			제46조 개인정보 정정, 보완 요구권			
	제10조 개인정보 처리 시 법률 준수			제47조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파기			
	제11조 개인정보보호 제도 수립 등			제48조 개인정보 처리 규칙에 대한 해석, 설명 요구권			
	제12조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 교류 등			제49조 개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프로세스 수립			
제2장 개인 정보 처리 규칙	제1절 일반 규정	제5장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제50조 개인정보보호 조치				
			제51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제52조 국외 개인정보처리자의 중국 내 전문 기관 설립 혹은 대표자 지정				
			제53조 정기적 심사				
			제54조 사전 위험 평가				
			제55조 개인정보 구제 조치 및 유출 통지				
			제56조 개인정보보호 직무 담당 부처				
			제57조 개인정보보호 업무				
			제58조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칙, 표준 제정				
			제59조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조치				
	제2절 민감 개인정보 처리 규칙	제6장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	제7장 법률적 책임	제60조 개인정보처리자와 회의(면담)			
				제61조 기관, 개인의 민원 제기 및 신고 권리			
				제62조 법률 위반 시 벌금 부과			
				제63조 위법 행위 기록 및 공시			
				제64조 국가기관에 대한 처벌			
				제65조 개인정보 권익 침해에 대한 배상			
				제66조 다수 개인의 권익 침해 시, 소송 제기			
				제67조 법률 위반 시 형사 처벌			
				제3절 국가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특별 규정	제8장 부칙		제68조 적용 예외
							제69조 용어 정의
제70조 시행일							
제13조 개인정보 처리 조건	제6장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	제62조 법률 위반 시 벌금 부과					
제14조 개인정보 처리 동의		제63조 위법 행위 기록 및 공시					
제15조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제64조 국가기관에 대한 처벌					
제16조 동의 철회 권리		제65조 개인정보 권익 침해에 대한 배상					
제17조 부동의 또는 동의 철회 시 상품, 서비스 제공		제66조 다수 개인의 권익 침해 시, 소송 제기					
제18조 개인정보처리자 관련 정보 고지		제67조 법률 위반 시 형사 처벌					
제19조 고지 면제, 사후 고지		제8장 부칙	제68조 적용 예외				
제20조 개인정보 보관 기간			제69조 용어 정의				
제21조 복수의 개인정보처리자			제70조 시행일				
제22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제8장 부칙		제33조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한 법률 적용			
제23조 합병, 분할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제34조 개인정보 처리 시 법률 준수						
제2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35조 개인에게 고지 및 동의						
제25조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동 의사 결정	제36조 개인정보 공개 혹은 타인 제공 금지						
제26조 개인정보 공개 금지	제37조 개인정보 중국 내 보관						
제27조 이미지 수집, 개인신문 식별 설비 설치							
제28조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표 2] 중국 개인정보보호법과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비교

구분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담당 부처	-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 국무원 유관 부처 ※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공업정보화로 추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목적	- 개인정보 권익 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 행위 규정 - 개인정보의 체계적이고 자유로운 이전 보장 및 합리적 이용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
적용 대상	- 중국 내에서 자연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개인 - 중국 외에서 국내 자연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조건 중 하나에 해당 ※ ① 국내 자연인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 ② 국내 자연인의 행위를 분석, 평가 ③ 법률 및 행정법규 상 규정된 기타 사항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개인 정보	-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되고 이미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 관련 모든 정보로 익명 처리 이후의 정보는 포함하지 않음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민감 정보	- 일단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개인이 차별 대우를 받거나 인신, 재산 안전 상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보로 종족, 민족, 종교 신앙, 개인 생물학적 특징, 의료 건강, 금융 계좌, 개인 행적 등 포함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
국의 이전	-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 ※ ① 안전성 평가, ② 개인정보보호 인증, (3) 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개인정보보호 표준에 부합, (4) 기타 조건	-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의 권리	-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알 권리와 결정권 - 타인에 의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복제를 요구할 권리 -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 보완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규칙에 대한 해석, 설명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개인정보 처리자(사업자)의 의무	-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행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부처에 보고 - 국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중국 내 전문 기관 설립 혹은 대표자 지정, 부처에 보고 - 개인정보 처리 행위, 보호 조치 등 정기 심사 -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해 사전 위험 평가 및 기록 - 개인정보 유출 상황 발견 시 구제 조치 수행 및 부처·개인에 통지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수행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개인정보 유출 통지
처벌	- 심각한 위반 시 최대 5,000만 위안(85억 원)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 벌금. 책임자에게는 10만~100만 위안 벌금. 관련 업무 정지, 영업 중단, 영업 허가 취소 - 위반 시 최대 100만 위안(1.7억 원) 이하 벌금. 책임자에게 1만~10만 위안 벌금	-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 위반 조항별로 10년·5년·3년·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3천만·2천만 원 이하 벌금
구성	- 8장 70조	- 9장 76조

- 제29조 민감 개인정보란 일단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개인이 차별 대우를 받거나 인신, 재산 안전 상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보. 종족, 민족, 종교 신앙, 개인 생물학적 특징, 의료 건강, 금융 계좌, 개인 행적 등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참조
- 국가기관의 법적 직무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시 법률에 규정된 권한·절차 준수, 개인에게 고지·동의, 중국 내 보관(제33조~제37조)

3.3. 개인정보 국외 이전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조건 충족, 개인에게 관련 정보 고지 및 별도 동의(제38조~제39조)
 - 제38조 (1) 본 법률 제40조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 기관의 안전 평가(安全评估) 통과, (2)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 규정에 근거하여 전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증 진행, (3) 국외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본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감독,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 제39조 해외에서 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신분, 연락처, 처리 목적, 처리 방식, 개인정보 유형, 정보를 이전받는 해외 주체에게 본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등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참조
-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와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중국 내 보관, 국외 이전 시 안전성 평가 통과(제40조)
 - 네트워크 안전법 제31조 핵심 정보 인프라는 공공 통신, 정보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리, 금융, 공공 서비스, 전자정부 등 중요 산업과 영역에서 파괴, 기능 상실,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면 국가 안전, 국가 경제, 국민 생활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줄 수 있는 시설⁹⁾
- 국제 사법 공조 또는 행정 상 협조를 위하여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주관 부처의 승인(批准)(제41조)

- 국외 기관·개인이 중국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 침해, 중국의 국가 안보, 공공이익 위협 시, 개인정보 제공 제한·금지 목록에 포함하고 개인정보 제공 제한·금지 조치(제42조)
 - 일종의 블랙리스트(blacklist)로 중국 정부에서 해외 서비스를 차단하는 근거 조항으로 활용 가능
- 임의 국가·지역이 중국에 차별적 금지, 제한 시 해당 국가·지역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제43조)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3(상호주의) 참조

3.4. 개인의 권리

- 개인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알 권리, 개인정보 처리 결정·제한·거절 권리, 개인정보 열람·복제·정정·보완·파기·해석·설명 요구 권리(제44조~제48조)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참조

3.5.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행,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정기적 심사, 사전 위험 평가, 개인정보 유출 시 구제 조치 및 통지(제50조~제51조, 제53조~제55조)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33조(개인정보 영향 평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참조
- 국외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중국 내 전문 기관 설립 혹은 대표자 지정, 개인정보보호 직무 담당 부처에 보고(제52조)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참조
 - GDPR 제27조(Representatives of controllers or processors not established in the Union) 참조

3.6.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처 및 권한

- 개인정보보호 직무 담당 부처는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 및 국무원 유관 부처이며 개인정보보호 교

육, 민원 처리, 조사, 평가·인증 지원 등의 업무 수행(제56조~제58조)

- 국가 인터넷 정보 관공실,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로 추정

3.7. 위반 시 처벌

- 법률의 심각한 위반 시 최대 5,000만 위안(85억 원)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형, 소득 몰수, 업무 정지, 영업 중단, 영업 허가 취소 등 처벌 가능(제62조)
 - 제62조 (1) 법률 위반으로 담당 부처의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미 시정 시, 100만 위안 이하 벌금 부과.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요 관리자와 담당자는 1만 위안 이상 최대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2) 심각한 위반인 경우, 시정 명령, 위법하게 발생한 소득 몰수, 5,000만 위안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 벌금 부과. 추가적으로 관련 업무 정지, 영업 중단, 영업 허가 취소 명령 가능.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요 관리자와 담당자는 10만 위안 이상 최대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참조
- 국가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미 이행 시, 시정 명령 및 책임자 처분(제64조)
- 개인정보 권익 침해 시, 개인의 손실 혹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수익에 근거하여 배상(제65조)
- 다수의 권익 침해 시, 담당 기관이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제66조)
- 보안 관리 위배 시 처벌, 범죄 해당 시 형사적 책임(제67조)

3.8. 용어 정의

- 개인정보처리자, 자동 의사 결정, 비식별화, 익명화 용어 정의(제69조)
 - 제69조 (1) 개인정보처리자란 자체적으로 처리 목적, 처리 방식 등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결정하는 기관, 개인 (2) 자동 의사 결정이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행위 습관, 관심사 또는 경제, 건강, 신용정보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

동 분석, 평가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3) 비식별화란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추가 정보의 도움 없이는 특정 자연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과정 (4) 익명화란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특정 자연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며 다시 복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과정

IV. 고 찰

중국에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많다. 여기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경우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4.1. 향후 입법 동향

2016년 네트워크 안전법 제정 시, 주요 글로벌 ICT 기업들이 매우 강하게 반대한 사례가 있다¹⁰⁾. 본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국외 이전 제한,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대리인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여 영업 중인 많은 기업들이 자국을 통하여 강력한 항의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 일부 조항은 수정되거나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안전법은 2015년 6월 초안이 공개되며 심의가 시작하여 2016년 11월 최종 통과되어,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따라서 본법도 유사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2. 담당 부처의 신설

본법에서는 담당 부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 네트워크 정보 관공실과 공업정보화부가 담당 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 네트워크 정보 관공실은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전담하는 부처로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기에는 이해상충이 너무 크다. 따라서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운영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독립된 위원회 조직을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등 많은 국

가들이 위원회를 설립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4.3. 역외 적용

본법은 GDPR과 유사하게 중국 외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법을 적용하겠다는 역외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자국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에도 적용하고, 위반 시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거나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GDPR이 역외 적용을 먼저 채택하였기 때문에 논란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선례를 근거로 역외 적용을 자국 법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4.4. 데이터 국지화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중국 내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안전 평가를 통과하여야 국외 이전이 가능하다. 두 대상 모두 중국 정부에서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상당수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국이 개인정보를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도록 강제하여,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베트남도 데이터 국지화를 법에 규정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4.5. 개인정보 제공 제한·금지 목록

담당 부처는 국외 기관, 개인이 중국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안보, 공공이익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개인정보 제공 제한·금지 목록에 포함시키고 개인정보 제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중국은 네트워크 안전법 제47조에서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 차단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제68조에서 위반 시 500,000 위안 이하의 벌금, 업무 중단, 영업 중단, 웹사이트 폐쇄, 인허가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들은 정부가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콘텐츠 차단 등의 요구 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4.6. 대리인

중국 외에 위치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중국 내 전문 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표를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책임져야 하고, 해당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담당 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리인 제도는 GDPR,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모두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이용자 수, 매출액 등으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만 해당되지만, 중국은 그러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기업이 해당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점이 다르다.

4.7.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구제 조치를 취하고 담당 부처 및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GDPR,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한국은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하여야 하고, GDPR은 개인정보 유출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국은 이러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유출 사고 발생 시 담당 부처 통지는 필수이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한 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을 경우, 개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4.8. 위반 시 처벌

법률적 책임은 네트워크 안전법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되었다. 법 위반 시 담당 부처가 시정을 명하고, 이 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심각한 위반 시 최대 5,000만 위안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이다. 또한 벌금뿐만 아니라 업무 정지, 영업 중단, 영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여 전반적인 처벌 수준은 상당히 강력한 편이다. 참고로 GDPR의 최대 과징금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250억 원)이고, 한국은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4.9. 배상 및 소송

개인정보 처리 행위로 개인정보 권익이 침해된 경우, 개인의 손실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얻은 수익에 근거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상세한 절차나 최대 배상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도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다수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검찰, 담당 부처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은 집단분쟁조정이 거부될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V. 결 론

본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를 중요 자산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및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기 때문에 역외적용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 도입으로 일부 반발이 예상되지만, 입법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교역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법률 제정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규제 준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한국인터넷진흥원, 재중국 한국인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개발 보고서, pp. 1-2, 2017
- [2]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www.privacy.go.kr/pic)
- [3] 정태인, “중국 개인정보보호 동향”, 2019 KISA REPORT, 한국인터넷진흥원, vol6, pp. 41-46, 2019
- [4] 네트워크 안전법(www.cac.gov.cn/2016-11/07/c_1119867116.htm)
- [5] 정태인, 김주영, 김원,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27(3), 2017
- [6]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공개(www.npc.gov.cn/npc/c30834/202010/569490b5b76a49c292e64c416da8c994.shtml)
- [7] 박원일, 개인정보의 로컬라이제이션에 관한 연구, 2017 Naver Privacy White Paper, 네이버, pp. 16-32, 2017
- [8] GDPR대응지원센터(gdpr.kisa.or.kr)
- [9] 정태인, 김주영, 김원, “중국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보호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27(5), 2017
- [10]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이 뭐길래, 세계 46개 상공단체, 중국 리커창 총리에 서한(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6081543611)

〈저자 소개〉

정 태 인 (Jung Taein)

정회원

1998년 2월 :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졸업

2000년 2월 :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 졸업

2000년 1월~2001년 6월 : 데이콤

2001년 7월~현재 :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정 수 연 (Choung Sooyoun)

2005년 9월 : University of Westminster 매스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학사 졸업

2007년 11월 : University of London, Goldsmiths College 매스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석사 졸업

2018년~현재 : 전남대 법학과 박사과정



2009년 1월~현재 :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윤재석 (Yun Jaesuk)

정회원

1998년 2월 : 동국대학교 영어영문
학과 학사 졸업

2000년 2월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
학과 석사 졸업

2017년 2월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
대학원 박사 졸업

2000년 2월 ~ 현재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협력팀 팀
장, ITU-D SG2 Q3/2(사이버보안) Vice-rapporteur

<관심분야>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